

[별표 5]

우수제품 장기지정 연장 사유 및 기준

호	연장사유	연장기간	기준
1호	<p>◆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아래 요건 모두 충족)</p> <p>가. 지정기간내에 30건 또는 60억 이상의 수요기관 납품실적(우수제품)을 보유</p> <p>나. 지정기간내에 납품검사 불합격 및 품질점검 부적합이 없음</p> <p>다. 지정기간내에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우수등급)</p>	1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2호	<p>◆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p> <p>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p> <p>나.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p>		
3호	<p>◆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p> <p>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p> <p>나.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p>	1년	
4호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1년	
5호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1년	
6호	품질보증조달물품 B0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1년	
7호	<p>「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p> <p>-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p>	1년	

<주>

1. 장기지정기업의 기준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전월 말일로 한다.
2.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3. 기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품명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의미한다.
5.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에 승소한 경우 우수제품 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지정연장 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지정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